

第301回國會  
(臨時會)

#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 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6月16日(木)

場 所 文化體育觀光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 審査된案件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흥길 · 권영진 의원 발의)(계속) ..... 1

(10시53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제1야전군사령부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회의 불참 승인을 요청하시고 대신 차관이 나오셨는데,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대리참석을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면 받으시고요.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흥길 · 권영진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황우여 의사일정 제1항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명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명규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규 위

원장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7일 회의를 갖고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대회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의 결산 보고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제정안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신학용 위원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설치하는 법안은 왜 안 올라 왔어요? 오늘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명규 위원 아니, 그때 합의 안 되고 조금 이따 보자고 그랬어요. 인천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이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안 한다고……

○위원장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신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합의점을 찾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학용 위원 그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6월까지는 하겠다. 그동안에 인천시 빨리 의견 수렴해 가지고 보내라’ 그랬더니 인천시에서도 ‘알았다. 하여튼 6월 내에는 해 줘도 좋겠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락을 안 받은 모양이지요?

○이명규 위원 아직 연락을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어요.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양 간사님들께서 장애인올림픽의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마치고 또 소위의 의견이 모아지면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위원장 황우여 예, 말씀하시지요.

○이용경 위원 여기 공무원 파견을 받게 되면 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누가 합니까? 파견받은 조직에서 하나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는 파견받은 기관에서요.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파견받은 조직에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용경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유치가 됐지요? 이게 10회째라 그러는데 지난 전 대회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나경원 위원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는 10회째 이고요.

○이용경 위원 9회는 어디에서 열렸지요?

○나경원 위원 지난번 동계대회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했고요, 올해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용경 위원 아이다호에서 열렸을 때는 선수가 몇 명이 왔었고 그다음에 관객은 얼마나 있었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제가 자료를 따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그냥 말씀드리면 아이다호에서 2009년에 96개국에서 2800명 참석을 했습니다. 77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로 미국에서 대체로 열렸고요,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에서 한 차례씩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용경 위원 아이다호에서는 관객이 얼마나 동원됐나요? 아, 여기 있나요? 관객 숫자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관객 숫자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호영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법조문을 다 오래 못 봐서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민법상의 법인 비슷하게 돼 있다가 이제 공법인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 법의 유효기간은 아마 한시법으로 2014년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은 경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잔여재산 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법의 유효기간은 2014년, 언제까지인가요? 6월까지인가요? 이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조직위원회를 꾸리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파견받아서 근무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하면 조직위원회 존속기간도 2014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경기가 끝나고도 한 1년 가까이 조직위원회 공무원들이 다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직위원회가 언제쯤 해산한다는 이런 규정들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법의 유효기간만 정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작정 두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이것 정리하고 필요하다 해서 이 조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이 조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다른 국제경기 조직위원회도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직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규정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별해 보니까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제경기의 조직위원회도 조직위원회 해산기간을 명시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대체로 다 복귀가 됩니다. 청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아서 결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다른 조직위원회에 관한 법안들도 이렇게 없이 둔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법 유효기간을 굳이 1년 뒤까지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이것은 사실 법안이 제출될 때 유효기간을 1년 전으로 못 박아 가지고 제안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주호영 위원 1년 전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청산되는 것으로…… 그런데 끝나자마자 청산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 그것을 결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를, 결산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기간을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주호영 위원 그래도 1년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게 오래 지속되는 위원회도 아니고 한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뒤에 1년이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끝나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법에서 1년으로 정하면 앞으로 유사한 국제경기 조직위원회의 유효기간이 다 1년으로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에,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가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딱 1년으로 규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 여기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감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체육계에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다른 경기에서 느꼈던 아주 불편한 모습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포셜 올림픽은 장애우들을 위한 것인 만큼 국가적인 행사이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다시는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 그런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위원회는 문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구성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최종원 위원 조직위원회를 위한 집행위원은 다 구성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최종원 위원 저는 그것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체육계의 어떤 잡음이 국가적인 행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인천의 예도 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시지요?

○나경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조직위원회는 한 6개월 존속하고 6개월 내에 청산하도록……

○위원장 황우여 축조심의할 때 하면 어떨까요?

○나경원 위원 의결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우여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張倫碩 委員 제정법이니까 축조심사를 해야지.

○위원장 황우여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축조심사에 들어가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2조에서 마지막 부칙 조항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년이나 6개월이나……

○張倫碩 委員 부칙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1년이 좀 길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조속히 또 청산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기한을 줬으면 하는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6개월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신학용 위원 제청합니다.

○이명규 위원 2013년 말까지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우여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끝나자마자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처음에 올랐던 법안에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는 좀 부족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논의 과정에서 6개월이 늘어났던 겁니다.

○위원장 황우여 괜찮으시겠어요?

○張倫碩 委員 원 법대로 하지요.

○이명규 위원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경원 위원 원래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수정안을 재수정하여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되 부칙 제2조는 전체회의에서 수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차관님, 한 말씀만 인사하시도록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이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지원법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영진	나경원	노영민	신학용
윤상일	이명규	이용경	이학재

이 한 성    장 윤 석    주 호 영    최 중 원  
황 우 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    환    민  
전 문 위 원            석    영    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박    선    규  
체 육 국 장            김    기    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11. 5. 30 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  
강승규·이경제·최인기·한선교·이낙연·  
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6월 1일 회부됨